

202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리즈 ①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차 정오표 [2021.4.5]

[제1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]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
29	운영기관 명칭 변경	한국감정원	<u>한국부동산원</u>						
54									
80									
91									
104									
54	운영기관 명칭 변경	한국시설안전공단	<u>국토안전관리원</u>						
91									
104									
67	(3)항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r> <td>3. 건축물의 범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</del>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4. 규모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</del>, 기숙사 : 연면적 3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(<del>공동주택, 기숙사 제외</del>)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	3. 건축물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</del>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	4.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</del>, 기숙사 : 연면적 3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(<del>공동주택, 기숙사 제외</del>)</li> </ul>	<p>5.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일 것</p> <p>6. 1<sup>++</sup> 이상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.</p>
3. 건축물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주택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</del>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li>• 냉방 또는 난방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인 기타 건축물</li> <li>(인증평가 불가능 공간이 전체 연면적 50% 이상일 경우 제외)</li> </ul>							
4.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• <del>공동주택</del>, 기숙사 : 연면적 3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(<del>공동주택, 기숙사 제외</del>)</li> </ul>							
68	(4)항 내용 추가	<p><b>(4)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청</b></p> <p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③항의 인증평가결과에 따라 1<sup>++</sup>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<b>(4)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청</b></p> <p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③항의 인증평가결과에 따라 1<sup>++</sup>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
113	(2)항 내용 변경 및 추가	<b>(2) 업무수행</b>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,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	<b>(2) 업무수행</b>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,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<u>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,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.</u> ④ ②, ③항의 금지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. ⑤ <u>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u>				
126	09. 벌칙 1)항 요점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반사유</th> <th>처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<u>사람</u></li> <li>·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<u>사람</u></li> <li>· <u>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</u></li> <li>· <u>상기 행위를 알선한 사람</u></li> </ul> </td> <td>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사유	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<u>사람</u></li> <li>·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<u>사람</u></li> <li>· <u>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</u></li> <li>· <u>상기 행위를 알선한 사람</u></li> </ul>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	
위반사유	처벌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<u>사람</u></li> <li>·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<u>사람</u></li> <li>· <u>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</u></li> <li>· <u>상기 행위를 알선한 사람</u></li> </ul>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						

[제2편 건축법]

페이지	항 목	오	정
143	7)항 변경 및 8)항 추가	7)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.	<b>7) 결합건축</b> <u>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</u> <b>8) 부속건축물</b>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.
151	요점 1) 표 내용 및 우측 박스 내용 수정	철거	<u>해체</u>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
193	3)항 표 내용 삭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)의 제정·개정 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건축선(建築線)의 지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</li> <li><del>4. 분양 목적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/del></li> <li>4.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</li> <li>5.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방건축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													
208	[2] 매도청구 ⑤항 내용 수정	<p>⑤ ④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.</p>	<p>⑤ ④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<b>감정평가법인 등 2인</b> 이상이 평가한 금 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.</p>												
242	2) 감리권한 1항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감리 종류 및 대상</th> <th>감리자 자격</th> <th>감리자 배치 및 감리방법 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          1. 일반공사감리                      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                    ②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                </td> <td>건축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시 및 필요한 때 <b>공사현장에 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          2. 상주공사감리                      ① 바닥면적의 합계 5천㎡ 이상인 건축공사(축 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 축공사는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② 연속된 5개층(지하층 포 함)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㎡ 이상인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③ 아파트                     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공사                      ⑤ <b>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공사</b>                      ⑥ <b>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</b> </td> <td>건축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수행</li> <li>• 도목·전기·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 동안 <b>공사현장에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          3.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               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- 건설기술용역 업자</li> <li>• 건축사(「건설기술진흥 법」에 따른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배치시)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책임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 감리 업무 수행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감리 종류 및 대상	감리자 자격	감리자 배치 및 감리방법 등	1. 일반공사감리 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②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	건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시 및 필요한 때 <b>공사현장에 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	2. 상주공사감리 ① 바닥면적의 합계 5천㎡ 이상인 건축공사(축 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 축공사는 제외) ② 연속된 5개층(지하층 포 함)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㎡ 이상인 건축공사 ③ 아파트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공사 ⑤ <b>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공사</b> ⑥ <b>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</b>	건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수행</li> <li>• 도목·전기·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 동안 <b>공사현장에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	3.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- 건설기술용역 업자</li> <li>• 건축사(「건설기술진흥 법」에 따른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배치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책임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 감리 업무 수행</li> </ul>	
감리 종류 및 대상	감리자 자격	감리자 배치 및 감리방법 등													
1. 일반공사감리 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②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	건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시 및 필요한 때 <b>공사현장에 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													
2. 상주공사감리 ① 바닥면적의 합계 5천㎡ 이상인 건축공사(축 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 축공사는 제외) ② 연속된 5개층(지하층 포 함)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㎡ 이상인 건축공사 ③ 아파트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공사 ⑤ <b>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공사</b> ⑥ <b>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</b>	건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을 전체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수행</li> <li>• 도목·전기·기계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공사 기간 동안 <b>공사현장에서</b> 감리업무 수행</li> </ul>													
3.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- 건설기술용역 업자</li> <li>• 건축사(「건설기술진흥 법」에 따른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배치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책임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 감리 업무 수행</li> </ul>													
274	2) 계단의 설치 ①항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보행거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원칙</td> <td>30m 이하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2.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료로 된 건축물(지하층에 설치한 바닥 면적의 합계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 제외)</td> <td>일반적인 경우</td> <td>50m 이하</td> </tr> <tr> <td><b>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인 경우</b></td> <td>40m 이하</td> </tr> <tr> <td>자동화생산시설의 자동식 소화설비 공장인 경우</td> <td>75m 이하(무인화공장 : 100m 이하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보행거리	1. 원칙	30m 이하	2.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료로 된 건축물(지하층에 설치한 바닥 면적의 합계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 제외)	일반적인 경우	50m 이하	<b>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인 경우</b>	40m 이하	자동화생산시설의 자동식 소화설비 공장인 경우	75m 이하(무인화공장 : 100m 이하)		
구분	보행거리														
1. 원칙	30m 이하														
2.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료로 된 건축물(지하층에 설치한 바닥 면적의 합계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전시장 제외)	일반적인 경우	50m 이하													
	<b>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인 경우</b>	40m 이하													
	자동화생산시설의 자동식 소화설비 공장인 경우	75m 이하(무인화공장 : 100m 이하)							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
298	4)항 표 내용 수정	3. 계단실 부분, 복도 또는 승강기의 <b>승강장 및</b> 승강로 부분( <del>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바</del> 부분을 포함)	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회구획으로 구획된 부분												
314	(1) 실내건축 1)항 표 내용 추가	1. 다중이용 건축물 2.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음의 건축물 -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,000㎡ 이상인 건축물 - 30실 이상인 오피스텔(일반업무시설) -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인 것 -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 <b>3. 휴게음식점</b> <b>4. 제과점</b>													
321	3) 식별표시 설치 내용 수정	3) 식별표시 설치 11층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·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	3) 식별표시 설치 11층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<b>창을 설치하고</b> 외부에서 주·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b>단, 비상용 승강기,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한다.</b>												
323	요점 1)항 표 변경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 건축물</th> <th>구획되는 부분</th> <th>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② 다가구 주택</td> <td>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</td> <td rowspan="4">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>③ 기숙사의 침실 ④ 의료시설의 병실 ⑤ 학교의 교실 ⑥ 숙박시설의 객실 ⑦ 산후조리원 · 임산부실 · 신생아실 · 임산부와 신생아실</td> <td>각 거실간의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>⑧ 다중생활시설(2층근린생활시설)</td> <td>호실간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>⑨ 노인복지주택 ⑩ 노인요양시설</td> <td>세대간 경계벽 호실간 경계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	구획되는 부분	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	①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② 다가구 주택	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③ 기숙사의 침실 ④ 의료시설의 병실 ⑤ 학교의 교실 ⑥ 숙박시설의 객실 ⑦ 산후조리원 · 임산부실 · 신생아실 · 임산부와 신생아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⑧ 다중생활시설(2층근린생활시설)	호실간 칸막이벽	⑨ 노인복지주택 ⑩ 노인요양시설	세대간 경계벽 호실간 경계벽	
대상 건축물	구획되는 부분	벽의 구조 및 설치방법													
①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② 다가구 주택	각 세대간 또는 가구간의 경계벽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,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
③ 기숙사의 침실 ④ 의료시설의 병실 ⑤ 학교의 교실 ⑥ 숙박시설의 객실 ⑦ 산후조리원 · 임산부실 · 신생아실 · 임산부와 신생아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													
⑧ 다중생활시설(2층근린생활시설)	호실간 칸막이벽														
⑨ 노인복지주택 ⑩ 노인요양시설	세대간 경계벽 호실간 경계벽														
362	(1) 환기설비대상 표 내용 수정	1. <b>30세대</b> 이상의 공동주택 2.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<b>30세대</b> 이상인 건축물	· 자연환기 · 기계환기												
363	예제문제 11번 보기 수정	① 100세대 이상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한다.	① <b>30세대</b> 이상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한다.												
364	예제문제 13번 보기 수정	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.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것	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<b>30세대</b>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.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것						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
366	요점 (1)항 표 내용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요양병원</li> <li>· 정신병원</li> <li>· 노인요양시설</li> <li>· 장애인거주시설</li> <li>· 장애인 의료재활시설</li> <li>· <u>산후조리원</u></li> </ul>	
374	⑨ 차수설비 등 (1) - ①항 내용 수정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(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)에 차수판(遮水板)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(이하 “차수설비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<u>않도록</u>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(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)에 차수판(遮水板)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(이하 “차수설비”라 한다)를 <u>설치해야</u> 한다. 다만, <u>법 제5조제1항에 따른</u>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그렇지 않다.</u> <개정 2020.10.10>

[제3편 에너지법]

페이지	항 목	오	정
416	요점 (1)항 표 내용 변경	5. 부품·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	5. <u>특화선도기업</u>
423	(5)항 표 내용 수정	2.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	2. 해당 사업연도의 <u>재무상태표</u> 및 손익계산서

[제4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]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8	(3) 열사용기자재 1항 표 내용 추가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품목명</th> <th colspan="2">적용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① 강철제 보일러, 주철제 보일러</td> <td rowspan="2">강철제 보일러</td> <td>· 1종관류 보일러</td> <td>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<sup>2</sup> 초과 10m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</td> </tr> <tr> <td>· 2종관류 보일러</td> <td>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이외의 금속(주철포함)으로 만든 것</td> </tr> <tr> <td>② 소형 온수보일러</td> <td colspan="3">전열면적이 14m<sup>2</sup> 이하이고, 최고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.</td> </tr> <tr> <td>③ 구멍탄용 온수보일러</td> <td colspan="3">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.</td> </tr> <tr> <td>④ 축열식 전기보일러</td> <td colspan="3">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이고, 최소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인 것</td> </tr> <tr> <td>⑤ 가정용 목욕보일러</td> <td colspan="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목재를 사용하여 90℃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℃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</li> <li>· 표시 난방출력 70kW 이하로 옥외설치할 것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품목명		적용범위		① 강철제 보일러, 주철제 보일러	강철제 보일러	· 1종관류 보일러	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 <sup>2</sup> 초과 10m 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	· 2종관류 보일러	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 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	이외의 금속(주철포함)으로 만든 것				② 소형 온수보일러	전열면적이 14m <sup>2</sup> 이하이고, 최고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.			③ 구멍탄용 온수보일러	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.			④ 축열식 전기보일러	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이고, 최소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인 것			⑤ 가정용 목욕보일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목재를 사용하여 90℃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℃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</li> <li>· 표시 난방출력 70kW 이하로 옥외설치할 것</li> </ul>			
		품목명		적용범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① 강철제 보일러, 주철제 보일러	강철제 보일러	· 1종관류 보일러	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 <sup>2</sup> 초과 10m 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· 2종관류 보일러	· 헤더 안지름 150mm이하 · 전열면적 5m <sup>2</sup> 이하 ·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이외의 금속(주철포함)으로 만든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② 소형 온수보일러	전열면적이 14m <sup>2</sup> 이하이고, 최고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구멍탄용 온수보일러	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축열식 전기보일러	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이고, 최소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인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가정용 목욕보일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목재를 사용하여 90℃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℃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</li> <li>· 표시 난방출력 70kW 이하로 옥외설치할 것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
469	참고 내용 삭제	<u>참고 전체 삭제</u>											
586	(2)항 제목 및 표 내용 수정	<p><b>(2)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, 시공범위(규칙 별표 3의2) &lt;개정 2021.1.1&gt;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품목명</th> <th>설치·시공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보일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철제 보일러</li> <li>주철제 보일러</li> <li>온수보일러</li> <li>구명탄용 보일러</li> <li>축열식 전기보일러</li> <li><u>·가정용 화목보일러</u></li> </ul> </td> <td rowspan="3">해당 기기의 설치·배관 및 세관</td> </tr> <tr> <td>2. 태양열 집열기</td> <td>· 태양열 집열기</td> </tr> <tr> <td>3. 압력용기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종 압력용기</li> <li>· 2종 압력용기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품목명	설치·시공범위	1. 보일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철제 보일러</li> <li>주철제 보일러</li> <li>온수보일러</li> <li>구명탄용 보일러</li> <li>축열식 전기보일러</li> <li><u>·가정용 화목보일러</u></li> </ul>	해당 기기의 설치·배관 및 세관	2. 태양열 집열기	· 태양열 집열기	3. 압력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종 압력용기</li> <li>· 2종 압력용기</li> </ul>	
구분	품목명	설치·시공범위											
1. 보일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철제 보일러</li> <li>주철제 보일러</li> <li>온수보일러</li> <li>구명탄용 보일러</li> <li>축열식 전기보일러</li> <li><u>·가정용 화목보일러</u></li> </ul>	해당 기기의 설치·배관 및 세관											
2. 태양열 집열기	· 태양열 집열기												
3. 압력용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종 압력용기</li> <li>· 2종 압력용기</li> </ul>												

[제5편 녹색건축물 관계법규 하위규정 등]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				
652	13항 표 내용 추가	<p>④ 위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</u></li> <li>2. <u>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</u></li> <li>3. <u>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</u></li> <li>4. <u>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</u></li> </ol>											
656 ~ 660	참고 내용 삭제	<u>참고 전체 삭제</u>											
720	③항 참고 표 내용 수정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자재</th> <th>적 용 범 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. 스크류냉동기</td> <td><u>응축기,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된 냉동능력이 1,512,000㎾/h(1,758.1kW, 500 USRT) 이하인 것</u></td> </tr> <tr> <td>7. 원심식 송풍기</td> <td>압력비가 1.3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(이하,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)로서, 그 크기는 임펠러의 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,800mm까지에 적용하며,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가 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</td> </tr> <tr> <td>8. 터보블로어</td> <td>압력비가 1.3 <u>초과</u>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 <u>초과</u>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</td> </tr> <tr> <td>13. 전력저장장치 (ESS)</td> <td><u>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'이차전지' 를 이용하고,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'SPS-SGSF-025-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' 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(Power conditioning system)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. 단,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</u> <u>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(kW)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인 것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자재	적 용 범 위	3. 스크류냉동기	<u>응축기,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된 냉동능력이 1,512,000㎾/h(1,758.1kW, 500 USRT) 이하인 것</u>	7. 원심식 송풍기	압력비가 1.3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(이하,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)로서, 그 크기는 임펠러의 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,800mm까지에 적용하며,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가 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	8. 터보블로어	압력비가 1.3 <u>초과</u>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 <u>초과</u> 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	13. 전력저장장치 (ESS)	<u>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'이차전지' 를 이용하고,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'SPS-SGSF-025-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' 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(Power conditioning system)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. 단,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</u> <u>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(kW)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인 것</u>	
기자재	적 용 범 위												
3. 스크류냉동기	<u>응축기,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된 냉동능력이 1,512,000㎾/h(1,758.1kW, 500 USRT) 이하인 것</u>												
7. 원심식 송풍기	압력비가 1.3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(이하,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)로서, 그 크기는 임펠러의 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,800mm까지에 적용하며,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가 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												
8. 터보블로어	압력비가 1.3 <u>초과</u>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 <u>초과</u> 로서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블로어												
13. 전력저장장치 (ESS)	<u>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'이차전지' 를 이용하고,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'SPS-SGSF-025-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' 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(Power conditioning system)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. 단,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</u> <u>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(kW)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인 것</u>						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		
730	④ 항 (1) ~ (3) 변경	<p><b>(1)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</b></p> <p>1) 대상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</li> </ul> <hr/> <p><b>  참고 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23 472 1469 121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23 517 932 562">대상건축물</th> <th data-bbox="932 517 1469 562">예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23 562 932 1211">                     연면적 합계 500m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                     • 건축법 11조에 다른 건축허가 (대수선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•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                     → 허가신청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    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932 562 1469 1211">                     1. 연면적합계 500m<sup>2</sup> 미만인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2.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3. 단독주택                      4. 동·식물원                      5. 냉방 및 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① 공장                      ② 창고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④ 자동차 관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⑥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⑦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⑧ 방송통신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⑨ 발전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⑩ 묘지 관련 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⑪ 운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⑫ 위락시설                      ⑬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건축물	예외	연면적 합계 5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• 건축법 11조에 다른 건축허가 (대수선 제외) •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→ 허가신청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	1. 연면적합계 500m <sup>2</sup> 미만인 건축물 2.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3. 단독주택 4. 동·식물원 5. 냉방 및 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공장 ② 창고시설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④ 자동차 관련 시설 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⑥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⑦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⑨ 발전시설 ⑩ 묘지 관련 시설 ⑪ 운동시설 ⑫ 위락시설 ⑬ 관광휴게시설	<p>2) 적용행위</p> <hr/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0 1283 1461 1422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60 1283 1214 142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축</li> <li>재축</li> <li>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별도 증축</li> </ul> </td> <td data-bbox="1214 1283 1461 1422">공동주택 제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hr/> <p>3) 취득등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축</li> <li>재축</li> <li>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별도 증축</li> </ul>	공동주택 제외
대상건축물	예외								
연면적 합계 5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• 건축법 11조에 다른 건축허가 (대수선 제외) •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→ 허가신청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	1. 연면적합계 500m <sup>2</sup> 미만인 건축물 2.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3. 단독주택 4. 동·식물원 5. 냉방 및 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건축물 ① 공장 ② 창고시설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④ 자동차 관련 시설 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⑥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⑦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⑨ 발전시설 ⑩ 묘지 관련 시설 ⑪ 운동시설 ⑫ 위락시설 ⑬ 관광휴게시설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축</li> <li>재축</li> <li>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별도 증축</li> </ul>	공동주택 제외								
		<p><b>(2)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취득</b></p> <p>1) 대상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인 공동주택</li> </ul>			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				
730	④ 항 (1) ~ (3) 변경	<p>2) 적용행위</p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축</li> <li>• 재축</li> <li>• 개축</li> <li>• 별도증축</li> </ul> <hr/> <p>3) 취득등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(의무규정)</li> </ul> <p><b>(3)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(BEMS)설치</b></p> <p>1) 대상</p> <hr/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70%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건축물</li> </ul> </td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예외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오피스텔</li> <li>• 공장</li> <li>• 자원 관련 순환시설</li> <li>• 발전시설</li> </ul> </td> </tr> </table> <hr/> <p>2) 적용행위</p> <hr/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축</li> <li>• 별도증축</li> </ul> </td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BEMS 구축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.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 <hr/> <p>3) 설치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(BEMS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li> <li>② 공공기관은 설치 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BEMS 운영성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건축물</li> </ul>	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오피스텔</li> <li>• 공장</li> <li>• 자원 관련 순환시설</li> <li>• 발전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축</li> <li>• 별도증축</li> </ul>	BEMS 구축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.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기관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의 건축물</li> </ul>	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</li> <li>• 오피스텔</li> <li>• 공장</li> <li>• 자원 관련 순환시설</li> <li>• 발전시설</li> </ul>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축</li> <li>• 별도증축</li> </ul>	BEMS 구축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.						
731	(4) 에너지진단 2)항 내용 수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다.</li> <li>② 건축물에너지효율 1<sup>++</sup> 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③ BEMS를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 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 받을 수 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다.</li> <li>② 건축물에너지효율 1<sup>++</sup> 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<b>진단</b>을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③ <b>BEMS</b>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 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 받을 수 있다.</li> </ul>				
734	예제문제 44 해설 변경	<p><b>해설</b> 시장형,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<sup>++</sup>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/p>	<p><b>해설</b> 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인 공공기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</p>				

페이지	항 목	오	정
734	예제문제 45 보기 수정	① 연면적 5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신축 ② 연면적 10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신축 ③ 연면적 5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건축 ④ 연면적 10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건축	① 연면적 5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신축 ② 연면적 <u>1,000m<sup>2</sup></u> 이상 건축물의 신축 ③ 연면적 5,000m <sup>2</sup> 이상 건축물의 건축 ④ 연면적 <u>1,000m<sup>2</sup></u> 이상 건축물의 건축
	해설 수정	<b>해설</b> BEMS 구축대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,000m <sup>2</sup> 이상의 건축물 을 신축·별동 증축하는 경우	<b>해설</b> BEMS 구축대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<u>1,000m<sup>2</sup></u>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·별동 증축하는 경우
736	예제문제 50 보기 ② 수정	②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++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 을 수 있다.	②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<u>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</u>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[과년도 출제문제]

페이지	항 목	오	정
771	2016년 2회 15번 보기 ① 수정	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.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것	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<u>30세대</u>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.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것
776	2017년도 3회 12번 해설 변경	<b>해설</b> 건축물 에너지효율 1++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 야 한다.	<b>해설</b> <u>연면적 1000m<sup>2</sup> 이상인 공공기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</u>
781	2018년 4회 6번 보기 ② 수정	②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++등급 이상을 취득 한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.	②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중 <u>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</u>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.